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70
----------	------

발의연월일 : 2016. 12. 8.

발의자 : 김민기 · 김경협 · 김병욱

김상희 · 김현권 · 노웅래

박남춘 · 손혜원 · 안민석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 략) ② (생 략)</p>	<p>제40조(별칙) ① ----- ----- ----- <u>2천만원</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